								과세표준 중과세율 5배			
부	'동 산 (토지 건	물 주택))6.01 '남표준액	* 가액비율 (50~90%	월 세율	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건물
	종합 합산 과세 대상	지상 정착물	학교용지, 공장용지 중 미착공 토지 농지를 사용 않고, 적재장으로 활용	임야	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제외의 모든			().5억 이하		.2%
		없는 토지	대지를 테니스장 골프장 나대지 갑종지		바닥면적 10배를 <mark>초과</mark> 한 부분					10만원 + 초과액*0.3%	
		77	입지지역 안 공장 중 면적 <mark>초과부분</mark>	농지	개인농지 중 미사용 / 도시지역 주상공 내 농지 일반법인 단체가 소유한 농지(분리과세대상 제외))	1억 초과	25만원 + 초과액*0.5%		
		공장 용지	시 이상 지역중 단지내 공장 중 면적 초과부분 시이상 지역중 주상녹 면적 초과부분 (면적 내 : 별도합산 대상)	일반 영업 용	무허가.위법 시공된 건물의 부속토 사용승인 없는 영업용 건물의 부속건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 건물 부속토지 중 법정기준면적 출건물 멸실 후 6월이 경과한 토지 영업용 토지로 의제하는 토지 중 한분리과세 대상 농지, 목장용지, 임	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용도지역 준주거.	^{有별} 상업지역	적용배율 3배
		목장 용지	도시지역 밖 목장용지 중 기준면적 초과 도시지역 내 주상공 목장용지 <mark>전부</mark> 891231 이전 소유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,개발제한구역 내 기준면적 초과 900101 이후 소유한 도시지역 중					도 시		공업지역	4배
								지지	전용주거 미계획 녹지		5배
							중 기준면적 초교	역			7배
				기타			임야 중	야 중	도지지역 외		7 의 기비 7 비
			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전부		취득시기 제한규정 이후 취득(상속. 합병 제외)						7 11
	별도 합산 과세 대상	건축물	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* 용도지역별 적용배율	- 기타	기타 사연유 투지 : 첫	차고용, 주기장 옥외작업 정		 		51 0.2%	
					운전학원 야적강 자동차관리사업용 자동차 및 안전도 물류단지 레미콘제조업용 운동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부설주차장 지 묘지인 법인토지(개인 비과세) 원형이 보존된 야 준보전산지 인가를 받은 종자생산용 토기 산종자생산업용 견인된 차 폐기물 매립용 토		설용 자동차 성 능				
			건축법에 따라 착공 제한된 건축물의 부수토지 하가.신고 후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로서 ~				설주차장 지목이	2	2억 ~ 10억 40		+ 초과액*0.3
토		토지	가스배관시설 등 지상정착물에 해당하는 토지				사생산용 토지 수		10억 초과 280만		+ 초과액*0.4
지			장, 고급오락장의 부수토지 : 분리과세								
70 %		if 건물 시가표준액 2이하 / 토지 시가표준액 100 -> 종합합산과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주택의						 토지 (철거건물은 비과세), <mark>6개월 초과 종합합산</mark>			
			전 답 과수원(농지)		목장 (개인법인 공	·통)	ē	jo‡		0.	07%
	분리 과세 대상 차등 비례 세율	개이	l역조건 : 군 or 도시지역 밖 or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, 녹지지역, 미계획지역 l용조건 : 영농에 사용	지역 조건: 군or도/ or 도시지역 중 녹지 개발제한구역의 목:		지역 밖 I역,	(준보전산지·	<mark>압산과세</mark> 야 : - 특수산림사업지구 1 <mark>산지- 보전산지(인가-실행중)에 있는 임야 산) - 보전녹지지역. 미계획지역의 임야</mark>			
		7	l역조건 도시지역 내 농지 -> 종합합산과세		면적 조건: 가축 수기준			90.05.31 이전소유+90.06.01이후상속 조거구 안 임야 공원자연환경지구 안 임0			
		법 인	한국공역존중사기 공기 중합 위해 소유한 공시 이		도시지역 중 녹지지역, 개발제한구역의 목장용 89.12.31이전소유+		예 891231 이 외 개발제한구역	전 소유임야 <mark>(자연보존지구 : 비과세)</mark> 격,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임야			
		or	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 + 직접 경작 (90.05.31이전소유+90.06.01부터상속)		90.01.01이후상속의경우 철			된지 2년 이내의 임야, 역임야, 철도보호지구임야, 원의 임야,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,			
		난	중종이 소유 or 사회복지사업자가								
			복지시설 소비용으로 소유한	한 농지	조시시작 네. 등합합인	크라제		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			
		공장	: :입지지역 내 공장용, 산업용 토지 + 건축중인	<u></u> 토지	지			호구역 안의 임야 (원칙 종합합산)			
		제오	■ 제외 : 6개월이상 사유없이 중단, 기준면적 초과:종합합산과세					녹지지역 안 공장 이내 - 별도합산		0,2%	
		지 (군)읍.면지역 ② 공장용지 ③ 산업단지 및 공 ④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부지취득이 완료된 토지			17104		기준면적 초과 - 종합			0.2 76	
		^				염전	기준면적 초	과 - 종	입입산		
		^	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부지취득이 완료된 토	지 ⑤ :	기타 한국 농어촌공사					<u>·</u> 투자회사가	소유한 토지
		기타	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부지취득이 완료된 토	지 ⑤ : 지 주택	기타 한국 농어촌공사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					<u>·</u> 투자회사가 4%	소유한 토지
건축	물	지 기타 고 일반	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부지취득이 완료된 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 간척한 토 강(회원제) 및 고급오락장 토지 (유흥주점영원 건축물 상가. 공장. 시설 기타 원	지 ⑤ 대 지 주택 법장, 특	기타 한국 농어촌공사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					4%	소유한 토지
건축 70°	. – I VI	4 기타 고 골프 일반 이상지'	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부지취득이 완료된 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 간척한 토 강(회원제) 및 고급오락장 토지 (유흥주점영업 건축물 상가. 공장. 시설 기타 용 격 주거지역 등 공장용 건축물	지 ⑤ 대 지 주택 법장, 특	기타 한국 농어촌공사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				지 부동산	0.5%	
_	. – I VI	4 기타 고 골프 일반 이상지'	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부지취득이 완료된 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 간척한 토 강(회원제) 및 고급오락장 토지 (유흥주점영원 건축물 상가. 공장. 시설 기타 원	지 ⑤ 대 지 주택 법장, 특	기타 한국 농어촌공사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			유한 토	O.25%	4% 0.5% 4%	1.25%
70 [°]	. – I VI	지 ④ 기타 고 골프 일반 이상지' 사치·	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부지취득이 완료된 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 간척한 토리 (강(회원제) 및 고급오락장 토지 (유흥주점영원 건축물 상가. 공장. 시설 기타 용 격 주거지역 등 공장용 건축물 성 건축물 골프장. 고급오락장	지 (5) : 지 주택 법장, 특 용도	기타 한국 농어촌공사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			<mark>유한 토</mark> 0.6억	O.25%	4% 0.5% 4%	1.25%
70° 주 택	. – I VI	지 4 기타 고 골프 일반 이상지' 사치·	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부지취득이 완료된 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 간척한 토 강(회원제) 및 고급오락장 토지 (유흥주점영업 건축물 상가. 공장. 시설 기타 용 격 주거지역 등 공장용 건축물	지 ⑤ : 지 주택 업장, 특 용도	기타 한국 농어촌공사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기 (구목욕장 포함)			0.6억 0.6억	0.25% 이하 ~ 1.5억	4% 0.5% 4% 0만원 + 초	1.25% .1% 과액*0.15
70 [°]	. – I VI	지 4 기타 고 골프 일반 이상지' 사치·	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부지취득이 완료된 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 간척한 토리 (강(회원제) 및 고급오락장 토지 (유흥주점영업 건축물 상가. 공장. 시설 기타 용 격 주거지역 등 공장용 건축물 성 건축물 골프장. 고급오락장	지 ⑤ : 지 주택 업장, 특 용도	기타 한국 농어촌공사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기 (구목욕장 포함)			0.6억 0.6억	O.25% 이하 ~ 1.5억 ~ 3억	4% 0.5% 4% 0 6만원 + 초 19.5만원 +	1.25% .1% 과액*0.15
70° 주 택 60	% \(\)	의 4 기타 고 골프 일반 이상지' 사치· 주: 초과누	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부지취득이 완료된 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 간척한 토리 (강(회원제) 및 고급오락장 토지 (유흥주점영업 건축물 상가. 공장. 시설 기타 용 격 주거지역 등 공장용 건축물 성 건축물 골프장. 고급오락장	지 ⑤ : 지 주택 업장, 특 용도	기타 한국 농어촌공사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기 (구목욕장 포함)			0.6억 0.6억 1.5억	O.25% 이하 ~ 1.5억 ~ 3억	4% 0.5% 4% 0 6만원 + 초 19.5만원 +	1.25% .1% 과액*0.15 · 초과액*0.25